

2020 제4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맞춤형 법제정보

- 일 본 제품안전법제
- 미 국 표시·광고법제
- 중 국 기업활력법제

◆ 외국법제동향

- 대 만 「국민법관법」
- 호 주 「현금사용제한법」
- 미 국 「로비스트법」
- 일 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법제
- 일 본 학교복합화 시설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외국법제동향

대만의 「국민법관법」 주요 내용

박재형 | 국립대만대학교 법학원 박사과정

I. 서 론

오늘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글로벌적인 추세이다. 사법제도가 발달한, 소위 ‘사법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부 국가(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호주 등을 말한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직접 사법에 참여하는 참심제¹⁾ 또는 배심제²⁾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 한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대만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7월 22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초안(國民參與刑事審判法草案), 이하 본 초안」³⁾이라는 법(안)이 대만 입법원⁴⁾ 임시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대만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에 이 초안은 동년 8월 12일 「국민법관법(國民法官法), 이하 본 법」⁵⁾이란 이름으로 제정·공포되었다.⁵⁾ 그런데 이 법(안)이 입법원에 통과

- 1. 참심제는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인인 참심법관과 직업법관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여 합의에 의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참심제는 각국에 따라 그 제도가 일률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중진,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7면.
- 2. 배심제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 또는 기소여부의 결정을 담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심원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에 대하여 평결(評決)을 내리면 법관이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인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담당하는 참심제도와 구별된다. 오늘날 배심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중진, 전계서, 14면.
- 3. 대만 사법원(司法院),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초안, 「국민법관법」 초안, 2020. 7. 22., <https://ntd.judicial.gov.tw/UserFiles/%E5%9C%8B%E6%B0%91%E5%8F%83%E8%88%87%E5%88%91%E4%BA%8B%E5%AF%A9%E5%88%A4%E6%B3%95%E8%8D%89%E6%A1%88.pdf>.
- 4. 한국의 국회에 해당함.
- 5. 대만 사법원, 「국민법관법」, 2020. 8. 12., <https://social.judicial.gov.tw/LayJudgeAttach/A892/%E5%9C%8B%E6%B0%91%E6%B3%95%E5%AE%98%E6%B3%95%EF%BC%88109.08.12%E7%B8%BD%E7%B5%B1%E5%85%AC%E5%B8%83%EF%BC%89.pdf>.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만 사법원⁶⁾은 1987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실무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의 도입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관련 법(안)은 30여년간 입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2016년 대만 총통에 당선된 차이잉원은 취임연설에서 현 대만 사법체계의 강도높은 개혁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법개혁에는 반드시 국민이 사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고, 이러한 염원을 반영하여 집권기간 내 대만형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반드시 수립할 것임을 천명하였다.⁷⁾ 집권여당이자 입법원의 다수당인 민진당은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본법(안)이 입법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대만의 국민법관제도는 참심제와 배심제가 결합된 혼합형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유사한 참심제의 성격이 강하다. 이하에서는 대만의 국민법관제도의 간략히 개관하고 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6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대만의 최고법원을 말한다.

7 1. 대만의 사법개혁 추진배경 및 절차: (배경)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5월 20일 취임연설을 통해 현 대만 사법체계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사법개혁은 단지 법조계 인사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절차) 대만 총통부는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국시회의(國是會議)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회의는 의견수렴, 분임토의, 결론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한편, ‘사법개혁국시회의준비위원회’가 동 업무를 전담한다.

2. 사법개혁 12개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제도 추진, ② 사법의 공개투명성 강화, ③ 법률전문가 인재양성 및 임용체계 개선, ④ 사법체계 중립성·전문성 강화, ⑤ 부적격한 사법인사에 대해 감독실시, ⑥ 증거법 완비, 무고한 희생 구제, ⑦ 사생활 보호, 소외계층 권리보호, ⑧ 아동보호체계 수립, ⑨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형사정책 검토, ⑩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실천, ⑪ 사회적 맥락에 맞는 법학교육실시, ⑫ 소송남용 근절, 사법절차 효율 증진.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6/view.do?seq=1317123; 사법개혁 12개 주요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만총통부, 사법개혁국시회의분임결의설명(12개 중점의제): 總統府, 司法國是會議分組決議歸納說明(12大項重點議題) 참조: <https://drive.google.com/file/d/0B6gni5Xwp9QwVV9JRFU3Vk12Qzg/view>.

II. 대만 국민법관제도의 개관

1. 대만 국민법관제도의 정의

‘국민법관제도’란 다양한 분야에서 상이한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일반국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⁸⁾

대만 사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운용경험과 대만사법원이 진행한 47회의 모의재판 등 실무에서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내린 결론은 국민의 사법참여는 좀 더 재판이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상이한 사회계층, 출신배경, 각기 다른 생활경험을 갖춘 국민들이 재판과정에서 소중한 생활경험, 법률에 대한 기대 및 상이한 가치관을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사법 인사들에게 외부와의 교류와 반성하는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국민과 사법인사 상호간의 교류와 피드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 데 폭넓은 시각과 내면을 가지는데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⁹⁾

2. 대만 국민법관제도의 연혁

대만 사법원은 1987년부터 「인민참여재판초안」 제정에 착수하기 시작한 이후, 「형사참심시행조례초안(刑事參審試行條例草案, 1987년~1998년)」, 「전문가참심시행조례초안(專家參審試行條例草案, 2000년~2006년)」, 「국민참심시행조례초안(國民參審試行條例草案, 2006년~2007년)」 및 「인민관심시행조례초안(人民觀審試行條例草案, 2012년~2016년)」 등 수 개의 초안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입법원을 통과하지 못하였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하여 국민법관제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7년 종료된 총통부 사법개혁국시회의(司法改革國是會議)¹¹⁾는 분임회의 중 ‘사법에의 인민참여(人民參與司法)’ 의제에 대한 4개

8 대만 사법원, 國民法官一起審判, 國民法觀제도 사법원 공식홈페이지, <https://social.judicial.gov.tw/LayJudge/Promoted/Introduction>.

9 대만 사법원, 國民法官一起審判, 國民法觀제도 사법원 공식홈페이지, <https://social.judicial.gov.tw/LayJudge/Promoted/Introduction>.

10 대만 사법원, 國民참여형사재판제도의 이론과 실무(國民參與刑事審判制度之理論與實務), 2019.12. 초판, 사법원, i면.

11 국시회의: 대만의 임시정치협상기구로서, 정부가 국가의 중대한 정치 또는 경제 관련 의제에 놓고 논의하기 위하여 여야 및 민간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https://zh.wikipedia.org/zh-tw/%E5%9C%8B%E6%98%AF%E6%9C%83%E8%AD%B0>.

의 안건¹²⁾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¹³⁾ 이에 따라 사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안) 연구위원회(國民參與刑事審判法案研議委員會, 이하 ‘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2017년 6월 29일부터 법조계 및 학계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본 위원회는 총 18회에 걸친 연수회 및 총 10회에 걸친 초안 설명회, 공청회, 기관협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각계각층의 건의사항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친 후에 초안이 완성되었다. 또한 사법원은 「본법」이 입법통과 후, 실무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2017년 11월 29일~2018년 8월 31일, 2018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에 걸쳐서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 위탁하여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2019년 말까지 총 47회 모의재판이 실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선임절차 등록인의 수는 총 1824명이다. 이 중 382명은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40명은 그림자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¹⁴⁾

2017년 11월 30일, 「본초안」이 사법원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8년 4월 12일 「본초안」이 행정원회의에서 통과되었고,¹⁵⁾ 2020년 7월 22일 입법원 임시회의에서 「본초안」이 최종 통과되었다.¹⁶⁾ 2020년 8월 12일 「국민법관법」이 공포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¹⁷⁾

12 “미국배심제(안건1)”, “일본재판원제(안건2)”, “참심제와 배심제를 5년간 병행하여 실시하고 5년 후 참심제 또는 배심제를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안건3)”, “사법원은 일본식 참심제 또는 미국식 배심제를 최소 5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5년 후, 어떤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최종검토 (안건4)”, 대만 사법원, 전게서, i면.

13 대만 사법원, 전게서, i면.

14 대만 사법원, 전게서, ii면.

15 대만 행정원(行政院),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초안 행정원회의에서 통과 2018. 4. 12., <https://www.ey.gov.tw/Page/9277F759E41CCD91/7c2f1a7e-015e-407f-a2c2-1e446726d26a>.

16 대만 입법원(立法院),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초안 입법원 임시회의에서 통과, 2020. 7. 22., <https://lis.ly.gov.tw/lylgmeetc/dispprog?8:00089DF000000101000000000000C800000003D000000000:0033663:lgmeetkm>.

17 대만 「법관법」 제113조.

III. 대만 「국민법관법」의 주요내용

2017년 11월 30일 「본초안」이 사법원 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2018년 1월 16일 및 동년 3월 23일에 두 번의 초안 개정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초안이 입법원에 통과된 이후에 다시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2020년 8월 12일 「국민법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공포되었다. 현행법은 총 7장 1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하에서는 필자가 편의상 국민법관법의 재판절차의 흐름도를 간단히 설명하고, 대만 「국민법관법」의 조문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였다.

〈표-1〉 「국민법관법」의 재판절차 흐름도¹⁸⁾

	1. 준비절차	사건을 정식으로 심리하기 전, 쟁점정리, 검사와 변호인은 증거조사를 신청하며, 법원은 심리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에 필요한 기간을 추산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할 국민법관을 선정한다.	2. 국민법관 선임절차	
	3. 국민법관 선서	국민법관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심리할 것을 표명한다.
재판장은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에게 법률원칙과 재판절차를 설명한다.	4. 재판절차 설명	
	5. 사건내용의 낭독	(서기관이) 금일 심리는 누가, 어떠한 사건으로 죄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정참석자들에게 알린다.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6. 개별신문	
	7. 공소제기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게 범행시간, 장소, 수단, 정황, 죄명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재판장은 어떤 범죄혐의가 있고 소송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한다.	8. 권리고지	
	9. 피고인과 변호인의 답변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고, 답변서의 내용을 설명한다.

18 대만 「사법원」, 전께서, 1~4면.

검사와 변호인은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한다	10. 공판개시 진술	
	11. 증거조사를 통한 당사자들의 주장	검사와 변호인은 법정 내에서 각자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증인, 서증-감정조서, 물증-흉기)를 제시한다.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안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문한다.	12. 피고인 신문	
	13. 과형자료조사	과형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다.
우측란에 설명한 내용 즉,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피고인 범죄 사실의 유·무죄여부에 대하여 변론한다.	14. 범죄사실 및 법률문제에 대한 변론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피고인 범죄사실의 유·무죄여부에 대하여 변론한다.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은 본안에서 과형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5. 고소인, 피해자 등이 과형에 대한 의견표시	좌측란에 설명한 내용 즉,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은 본안에서 과형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증거조사를 토대로 검사와 변호인은 어떤 한 종류의 형벌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각자 변론한다.	16. 과형에 대한 변론	
	17. 최종진술	피고인은 최종진술을 한다.
	18. 최종평의	
	19. 판결선고	
	20. 국민법관의 직무종료	국민참여재판법정은 모두에게 판결의 결과를 설명 한다.
국민법관의 임무가 종료된다.	21. 판결문작성	직업법관은 본안판결의 결과에 근거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
직업법관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문을 작성을 완료하고 판결문 원본을 서기관에게 교부 한다.	22. 판결문 원본 서기관에게 교부	
직업법관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문을 작성을 완료하고 판결문 원본을 서기관에게 교부 한다.	23. 판결문 송달	서기관은 판결문 정본을 제작하여 검사,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1. 총 칙

(1) 입법목적(제1조)

본법의 입법목적은 국민과 법관¹⁹⁾을 공동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시킴으로써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국민에게 사법에 대한 이해증진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다.

(2) 정의(제2조)

본 조는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 최종평의, 국민법관법정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① ‘국민법관’이란 본법에 의하여 선정되어 재판 및 최종평의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예비 국민법관’이란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선정된 후, 국민법관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국민법관에 선임된다. ③ ‘최종평의’란 국민법관법정에서 변론종결 후, 직업법관과 국민법관이 사실인정, 법률의 적용 및 과형에 대하여 공동으로 토의, 표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국민법관법정’이란 직업법관(직업판사) 3인과 국민법관(국민판사) 6인으로 구성되며, 본법에서 규정한 국민참여 재판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재판을 수행하는 합의부 형식의 법정을 말한다.

(3) 국민참여 재판법정의 조직

국민참여재판법정의 조직은 직업법관 3인과 국민법관 6인으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재판하는데(제3조), 만일 국민법관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예비 국민법관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국민법관이 된다. 이 때 수소법원은 국민법관이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4인까지 예비 국민법관을 미리 선임할 수 있다(제10조).

19 대만의 「법관법」 제2조에 따르면, 법관이란 ① 사법원 대법관; ② 징계법원의 판사; ③ 각 법원의 판사를 말한다. 대만의 「국민법관법」의 판사는 1심 법원의 판사를 가리킨다., 全國法規資料庫: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s=A003024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참여재판사건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제4조).

2. 대상사건과 관할(제5조~제7조)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제5조)

1) 대상사건의 범위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며, 대상사건으로는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사건,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말하며, 단 소년형사 사건과 마약류 관리 및 「위해방지에 관한 조례(毒品危害防制條例)」가 적용되는 사건은 제외한다(제5조 제1항). 전항의 죄명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한다. 검사가 제1항에서 정한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 수소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적용 규정을 변경하여야 제1항의 죄명으로 인정 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법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떨어주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추가기소와 관련한 규정은 국민참여재판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제5조 제4항).

2) 변호인 강제주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협력과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본법에 적용되는 모든 사건은 변호인 강제주의가 취해지고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이 국선변호인 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2) 국민참여재판에 배제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법관 또는 예비 국민법관 본인 및 그들의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이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내용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여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또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법원이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제6조 제1항~제5항).

(3) 검사가 병합기소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 사건을 병합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에 병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닌 사건인 경우 수소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당사자, 변호인 및 보조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7조).

3. 국민법관과 예비 국민법관(제8조~제42조)

(1)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의 권리와 의무

국민법관은 본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제8조). 국민법관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의과정에서의 비밀 및 기타 직무상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 법정출석일수에 따라 관할법원의 정하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받는다. 예비 국민법관은 국민법관이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국민법관에 임명된다(제10조~제11조).

(2)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의 자격 및 피선임 거절사유

1) 국민법관과 예비 국민법관의 적극적 자격

고졸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4개월 이상 거주한 만 23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의 적극적 자격을 갖는다(제12조).

2) 국민법관과 예비 국민법관의 소극적 자격: ① 특정상황, ② 특정직업, ③ 특정관계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법관과 예비 국민법관이 선임된 자가 즉, ① 전·현직 공무원이 공직기간 중 일정한 처분을 받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일신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직무수행능력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정한 직업군(대통령, 부통령, 각 정부기관의 수장, 군인, 경찰, 전·현직 판검사, 전·현직 (국선)변호사, 사법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에 종사하는 경우, ③ 피해자와 그 이해관계인인 경우 등, 각 사건마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구체적인 증거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제13조~제15조).

3) 국민법관과 예비 국민법관의 선임에 대한 거절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를 들어 연령(70세 이상), 교육(교사, 학생), 심신상태(질병, 상해, 생리 또는 심리적 요인), 친족에 대한 간호·양육, 생활, 직업, 가정에서의 중대한 수요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의 직무를 수행한 지 5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제16조).

(3)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 선임, 해임 등의 절차 및 직무종료(제17조~제38조)

1)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의 선임(제17조~제34조)

국민법관 후보자 제1차 선발명단(初選名單)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수소법원에 교부하고 해당수소법원은 법원에 설치된 국민법관 후보자심사소위원회(地方法院備選國民法官審核小組)²⁰⁾에게 국민법관과 예비국민법관(본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소극적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도록 위임한다(제17~19조). 그리고 국민법관 후보자 제2차 선발명단을 작성하여 구비하고 수소법원이 대상사건을 수리할 때까지 제2차 선발명단에서 개별 사안에 필요한 국민법관 후보자를 선발하여 선임기일에 법정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제20조). 국민법관의 선임절차는 비공개로 한다(제25조). 선임기일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리고 검사, 변호사는 신청에 의해 국민법관 후보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제26조). 수소법원은 국민법관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지 않거나, 또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일정 수의 특정 국민법관 후보자를 기피신청한 후(이유불요기피권), 다시 무작위로 추첨하여 순서에 따라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을 선정할 수 있다(제27조~제34조).

2)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의 해임

국민법관에 선임이 된 후, 만일 국민법관의 자격이 부적합하거나 법정의무에 위반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임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국민법관과 예비 국민법관이 심신상태, 간호 또는 양육, 중대한 재해 또는 기타 일상생활 중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제35조~제37조).

3)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의 직무종료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국민법관의 직무는 즉시 종료된다(제38조).

20) 「국민법관법」 제18조에 따르면, 각 지방법원은 국민법관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장 또는 그 지정된 자가 당연위원 겸 소집인이 되며, 전여위원 5인은 위원장이 초빙한 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해당 지방법판사 1인, ② 해당 지방법원 검찰청 검사 1인, ③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직할시·현(시)정부 민정국(처)장 또는 파견한 대표 1인; 4.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대표 1인; 관할구역 내 변호사협회 소속이 아닌 전국변호사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5. 전 항이외의 해당법원 관할구역내 학자, 전문가 또는 사회각계인사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 및 국민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호(제39조~제42조)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의 소속기관(구) 등은 이에 선임된 자에게 공가(또는 특별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제39조), 누구든지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 또는 국민법관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40조).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 또는 국민법관 후보자와의 접촉 및 연락을 취하거나, 법률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탐하여서도 아니된다(제41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변호인, 보조인,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은 신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2조).

4. 심리절차(제43조~제93조)

(1) 공소제기 및 공소장일본주의²¹⁾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재판경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민법관에게 사전에 증거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민법관과 직업법관이 증거열람의 유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 및 발생가능한 예단이나 편견을 피하기 위하여, 본법 제43조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서증 및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2) 기본원칙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강제처분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항은 본안심리를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처리하여야 한다(제44조).

21) 공소장일본주의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관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이나 증거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심증이 법원의 심증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동운, 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6년, 340면 이하 참조.

법률 또는 재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관(판사), 검사,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서 집중적이고 신속한 증거조사 및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법관과 예비 국민법관이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문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 최종평의시, 그들에게 의견을 완벽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제45조).

재판장은 소송지휘시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법정에서의 언사 또는 서면진술의 순수성과 객관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제46조).

(3) 공판 전 준비절차²²⁾

1) 공판 전 준비절차에서의 처리사항

법원은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판 전 준비절차를 행하여야 하는데(제47조 제1항), 이러한 준비 절차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①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검사가 인용한 적용법률에 대한 변경여부, ② 피고인 신문 및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여부의 답변, ③ 사건쟁점정리, ④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고지, ⑤ 증거개시와 관련한 사항, ⑥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⑦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에 대한 당사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⑧ 감정명령, 현장검증명령, ⑨ 증거조사의 범위·순서·방법의 확인, ⑩ 국민법관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 등이 있다(제47조 제2항). 공판준비 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하고, 검사,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법정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제48조). 또한 법원은 공판 전 준비절차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본법 제47조 제2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변호인, 보조인 및 소송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신문을 할 수 있으며(제49조), 공판 전 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50조).

22 공판 전 준비절차란 법원이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승현, 참여재판제도와 공판 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0면.

2) 증거개시절차

검사와 변호인은 공판 전 준비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 공판 전 준비절차가 완료되기 전 상호간 연락을 취하여, ①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피고의 진술 또는 답변, ② 본안의 쟁점, ③ 양당사자가 신청하기로 한 증거조사항목, 요증사실, 그 범위·순서·방법, ④ 양당사자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다(제51조). 검사는 공소제기 후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본안의 서증 및 물증을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제53조). 변호인은 검사의 증거개시 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제54조).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를 신청한 증거, 소환을 신청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이 공판기일 전에 진술한 기록을, 기록이 없는 경우, 공판기일에 진술한 요지에 상당한 기록을 기재한 서면 등의 증거를 검사에게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제55조). 변호인이 증거개시 후 검사는 신청한 증거조사의 증거능력 및 조사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의견을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표명하여야 한다(제56조). 검사와 변호인은 타방이 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시하여야 할 증거를 개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증거개시를 명령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제57조).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하는 때에는 법원은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리거나 검사 및 변호인에게 소지하고 있거나 보관중인 모든 증거를 즉시 개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제58조). 서증이나 물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150,000 신타이완달러(NTD)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 고소대리인 또는 소송참가인의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서증 및 물증을 검열할 것을 청구하거나 초록, 복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변호사가 아닌 소송참가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비용을 예납하여 검사에게 서증 및 물증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서증 및 물증의 내용이 피고인의 피소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거나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서면으로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제61조).

3) 증거채택

공판기일에는 국민법관에게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순조롭게 심증을 형성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소법원은 원칙적으로 공판 전 준비절차를 완료하기 전 신청에 의한 또는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당사자, 변호인과 공판 전 준비절차

정리결과 및 심리계획내용을 확인한 후 공판 전 준비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제62조~제63조). 이 때 공판 전 준비절차의 정리결과 및 심리계획이 허사가 된 경우에는 국민법관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① 당사자, 변호인 모두 동의하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판 전 준비절차 완료 후 증거를 취득하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③ 소송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정도가 미미한 경우, ④ 공판 중 증인진술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공판 전 준비절차 완료 전에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⑥ 당사자, 변호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여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64조).

(4) 공판기일

1) 국민법관의 선서의무

이들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의 선서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선서하여야 한다(제65조).

2) 공판 전 설명의무 및 연속개정(開廷)

국민법관을 실질적으로 심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판절차 개시 전에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의 중요사항(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국민법관·예비 국민법관의 권한·의무·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형사재판의 기본원칙, 피고인의 범죄구성요건 및 법령해석, 공판기일 추산에 필요한 시간 등)에 대하여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제66조). 만일, 국민법관이 도중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제67조). 소송촉진을 위하여 집중심리를 관철하고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연일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8조).

3) 직업법관의 합의사항

증거능력, 증거조사의 필요성 판단, 소송절차의 판정 및 법령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모두 법률 전문분야에 속하므로 직업법관만이 합의(合議)하여 결정한다.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변호인,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69조).

4) 공판개시 후 진술의무

검사는 증거조사절차 개시 전에 국민법관에게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리한 사항 즉, 요증사실, 증거조사의 범위, 순서 및 방법, 증거조사와 요증사실 간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제7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요증사실을 주장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전항의 설명 후, 국민법관법정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제70조 제2항).

5) 공판 전 준비절차결과의 공개와 심리계획의 변경

재판장은 제70조의 절차를 완료 후 공판 전 준비절차의 쟁점정리의 결과 및 증거조사의 범위, 순서 및 방법을 설명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당사자,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경우 공판 전 준비절차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범위, 순서 및 방법을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71조~제72조).

6) 증거조사절차

재판장은 당사자, 변호인이 신청하여 소환한 증인, 감정인, 통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문한 후 당사자, 변호인이 직접 신문한다.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은 증인, 감정인, 통역에 대한 증인신문을 완료하여 재판장에게 이를 알린 후 요증사항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신문하거나 재판장에게 보충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소사실에 대한 신문을 완료하는 때,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은 재판장에게 이를 알린 후 처벌 및 과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신문하거나 재판장에게 보충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은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 의견진술을 완료한 때에는 재판장에게 이를 알린 후 진술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신문하거나 재판장에게 보충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제73조).

당사자, 변호인이 신청하여 조사한 서증 및 기타 증거가 될 만한 문서는 신청인이 국민법관법정, 타방당사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에게 낭독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문서인 경우 재판장이 국민법관법정, 타방당사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에게 낭독한다(제74조). 문서이외의 물증(녹음, 영상녹화, 전자기록 또는 기타 유사한 물증)이 문서와 동일한 효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제75조). 당사자, 변호인이 신청하여 조사한 물증은 신청인이 국민법관법정, 타방당사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에게 제시하여 구분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물증은 재판장이 국민법관법정, 당사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에게 제시하여 구분한다(제76조). 당사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은 개별적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제74조에서 제7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후, 물증, 서증 또는 그 문서이외의 물증을 수소법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제77조~제78조).

7) 변론

증거조사를 마친 후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차례로 사실 및 법률에 대하여 변론한다. 당사자들이 제1차 변론을 마친 후, 동일한 순서에 따라 과형범위에 대하여 변론한다. 과형에 관한 변론 전에 법정에 출석한 고소인, 피고인 또는 당사자의 가족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과형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79조).

(5)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평의와 판결선고

1) 최종평의

직업법관과 국민법관은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론종결 후, 즉시 최종평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실인정, 법률적용 및 과형에 대하여 공동으로 토의한다. 최종평의는 재판장을 의장으로 하여, 직업법관과 국민법관 모두 전과정에 참여한다. 그리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업법관과 합의한 증거능력, 증거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및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국민법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제81조~제82조). 유죄인정은 국민법관 및 직업법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결정되며, 절차판결 및 과형에 관한 평의는 국민법관 및 직업법관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결정된다(제83조). 최종평의를 당일에 종결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일에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한다(제84조). 직업법관과 국민법관은 최종평의 시에 행한 개별적 의견진술, 의견분포, 평의의 진행경과에 관해서 재판확정 전까지 비밀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한다(제85조).

2) 판결선고

최종평의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직업법관은 판결선고 후, 30일 이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 그 원본을 서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86조). 그리고 판결문에는 국민법관 전체가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제87조).

(6) 상소심

국민법관이 적극적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제13조, 제14조의 소극적 자격을 갖춘 것으로는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제89조).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에 따라 심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원심판결의 선고를 존중하기 위하여, 원칙상 당사자, 변호인은 2심법원에서 새로운 증거조사의 신청을 할 수 없다(제90조). 그리고 2심법원이 항소이유가 있거나 항소이유가 없더라도 원심판결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은 항소를 통하여 부분 철회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인정에 관해서는 원심판결이 경험적 또는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철회될 수 있다(제92조).

(7) 재심

확정판결 후, 판결에 참여한 국민법관이 해당사건에서 직무상의 죄를 범한 것이 이미 증명되었고 원판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93조).

5. 벌칙(제94조~제102조)

(1) 형벌 부분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 국민법관 후보자가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국민법관 및 예비 국민법관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청탁하는 행위,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 또는 국민법관 후보자인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탐한 행위, 또는 국민법관, 예비 국민법관에게 그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부분만을 행사하게 할 의도가 있거나 또는 그 직무행사에 대하여 보복할 의도로 국민법관과 예비 국민법관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처벌(징역, 벌금 등)하거나 이에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제94조~제98조).

(2) 행정벌 부분

국민법관 후보자가 조서(질문서)에 부실하게 기재하였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진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 국민법관 또는 예비 국민법관이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국민법관이 공판기일과 최종평의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행위, 국민법관이 평의진행 시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벌(과태료)에 처한다(제99조~제102조).

6. 국민참여심판제도의 성과평가(제104조~110조)

(1) 성과평가위원회

사법원은 본법의 시행 후, “국민참여재판제도 성과평가위원회(成效評估委員會)”를 즉시 설치하여 필요 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전년도 제도시행의 성과에 대하여 성과평가보고서(成效評估報告)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최종결과보고서(總結報告)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5조).

(2) 평가기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과평가기간은 본법의 시행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제104조).

(3) 위원회 조직

그 밖에도 성과평가위원회의 조직방식, 간부 및 연구원에 관한 설치,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제106조~제110조).

7. 부칙(제111조~제113조)

(1) 시행세칙

본법의 시행세칙은 사법원이 행정원과 회동하여 정한다(제111조).

(2) 행위시법주의

시행 전 각급법원에 계속 중이면서 「국민참여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행 전 법정절차에 따라 이를 종결한다(제112조).

(3) 시행일

본법은 중화민국 112년(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3조).

IV. 결 론

대만정부에 따르면, 대만의 국민법관법은 초안준비단계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 기존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였고, 다수의 공청회, 모의재판을 통하여 대만의 사법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대만의 실무법조계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국민법관제도 시행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 법률전문가인 다수인 국민법관에 대하여 법률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 국민법관이 공판개시 전 단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공소장일본주의) 법정에서의 구두증거를 토대로 판결하는 경우 판단의 신뢰성 문제, 법에 따라 국민법관의 자격을 갖춘 다수의 국민이 직업활동과 가정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국민법관으로서 수행을 기피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등 다수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²³⁾ 따라서 2023년도 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3 蘋果日報, 司改踏出一步，國民法官有挑戰, 2020. 7. 22., <https://tw.appledaily.com/headline/20200722/73AARDIC6K53GH4ZBBZVCNLL5Y/>. 蘋果日報, 某一天, 被選為國民法官..., 2020. 7. 23., <https://tw.appledaily.com/headline/20200723/LNDZDIB7KS2QQ6JUTMJA7UM3CA/>.

참고문헌

- 도중진,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이승현, 참여재판제도와 공판 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신동운, 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06년.
- 대만 사법원(司法院),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의 이론과 실무(國民參與刑事審判制度之理論與實務), 2019.12., 초판, 사법원.
- 대만 사법원,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초안(國民參與刑事審判法草案)」, 국민법관법 초안, 2020. 7. 22.
- 대만 사법원, 「국민법관법」, 2020. 8. 12.,
- 대만 사법원, 國民法官一起審判, 국민법관제도 사법원공식홈페이지. <https://social.judicial.gov.tw/LayJudge/Promoted/Introduction>.
- 대만 총통부(總統府), 사법개혁국시회의분임결정설명(司法改革國是會議分組決議歸納說明)(12개 중점의제).
- 대만 행정원(行政院), 행정원회의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초안 통과 2018. 4. 12., <https://www.ey.gov.tw/Page/9277F759E41CCD91/7c2f1a7e-015e-407f-a2c2-1e446726d26a>.
- 대만 입법원(立法院),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초안 임시회의에서 통과, 2020. 7. 22.,
- <https://lis.ly.gov.tw/lylgmeet/dispprog?8:00089DF0000001010000000000000C800000003D000000000000003663:lgmeetkm>.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6/view.do?seq=1317123.
- 국시회의(國是會議), <https://zh.wikipedia.org/zh-tw/%E5%9C%8B%E6%98%AF%E6%9C%83%E8%AD%B0>.
- 全國法規資料庫,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30243>.
- 蘋果日報, 司改踏出一步, 國民法官有挑戰, 2020. 7. 22.,
- <https://tw.appledaily.com/headline/20200722/73AARDIC6K53GH4ZBBZVCNLL5Y/>.
- 蘋果日報, 某一天, 被選為國民法官, 2020. 7. 23.,
- <https://tw.appledaily.com/headline/20200723/LNDZDIB7KS2QQ6JUTMJA7UM3CA/>.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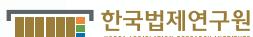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하기 GO”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82
E-Mail. foreignlaw@klri.re.kr

FAX. (044) 868-9919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ISSN 1976-0760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